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: 신용카드 소득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: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구분하기

루리

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에서 공제율 40%가 적용되는 항목이에요. 별도 공제가 아니라 같은 제도 안의 우대 항목이라, 총급여 25% 초과 조건과 한도를 함께 봐야 해요.

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에서 공제율 40%가 적용되는 항목이에요. 별도 공제가 아니라 같은 제도 안의 우대 항목이라, 총급여 25% 초과 조건과 한도를 함께 봐야 해요.

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26조의2>) (시행 2026. 9. 18. 표기)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해당 연도 사용분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**공식 확인**하세요. 예시는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 기본 정보

항목	내용
근거	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26조의2)
최저사용금액	총급여액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
대중교통 공제율	40%
신용카드 공제율	15%(대중교통·전통시장 등 제외분)
현금영수증·직불·선불카드	30%
기본 한도	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 250만 원 (자녀 등 조건별 상향은 법령 확인)
추가공제	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합계로 별도 한도

2 2.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

- 대중교통만 따로 공제받는 제도가 아니에요.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·직불·선불카드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 25%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해요.
- 그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분은 40%로 계산돼요. 일반 신용카드는 15%예요.
- 대중교통 범위는 법령상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수단 이용 금액이에요. 세부 대상은 공식 확인하세요.

3 3. 한도와 추가공제

- 국세청 안내는 기본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액을 합산한 추가 공제가 있다고 설명해요.
- 법령 조문에는 추가공제 항(제11항)이 2025년 말 개정으로 신설되어 문구가 바뀌었어요.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법령에서 공식 확인하세요.
-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법령 개정 시점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. 항상 법령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.

4 4. 순서
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사용액 조회를 확인해요.

- 총급여액의 25%를 계산해 최저사용금액을 알아요.
- 대중교통·전통시장·일반 사용액이 구분돼 있는지 봐요.
- 한도 안에서 공제액이 나오는지 확인해요.
- 모르면 국세상담 126에 문의해요.

5. 가상 예시

G씨(총급여 5천만 원)라는 가상 인물이에요. 최저사용금액은 1,250만 원이에요. 대중교통만 쓴다고 단순 가정하면 초과분에 40%를 적용하는 구조예요. 실제로는 사용 수단과 한도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는 설명용이에요.

6. 실수하기 쉬운 점

- 대중교통 사용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와 따로 표시되는지 꼭 확인해요.
- 총급여 25%를 넘지 못하면 공제가 없어요.
- 결제 수단(신용·체크·현금영수증)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. 세부는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시기별 우대율이 달랐어요. 법령에는 2023년 사용분에 80%가 적용된 문구가 있어요.

7. 체크리스트

- 총급여액과 25% 기준을 계산했다
- 대중교통 사용액이 분리 표시되는지 확인했다
- 기본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를 법령에서 확인했다
- 해당 연도 적용 규정을 확인했다

8. 용어 정리

- **최저사용금액**: 총급여액의 25%예요.
- **우대공제율**: 대중교통·전통시장 등에 더 높게 주는 공제율이에요.
- **추가공제**: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우대 항목으로 더 받는 공제예요.

9. 자주 묻는 질문

Q. 대중교통만 쓰면 신용카드 공제 없이도 되나요?

A. 아니에요. 같은 제도 안에서 계산돼요.

Q. 올해 규정이 바뀌었나요?

A.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과 법령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국세청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발급·수취시 혜택: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9&cntntsId=7794> ([http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9&cntntsId=7794]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9&cntntsId=7794))
-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26조의2>):
<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0529&chrClsCd=010202&lsId=001584&print=print> (<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0529&chrClsCd=010202&lsId=001584&print=print>)
- 국세청 전자(세금)계산서/현금영수증/신용카드: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7&cntntsId=7795> ([http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7&cntntsId=7795]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7&cntntsId=7795))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🌟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1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